

한림대학교 선거시행세칙



한림대학교

제1조 선거의 원칙

- 1항 선거는 한림대학교 학생회 사업을 발전적으로 평가 계승하여 학우들의 대표로 세우는 과정으로 치러져야 한다.
- 2항 한림대학교 총학생회 선거는 총학생회의 위상과 명예를 갖고 실시하며, 타 기관에 자문을 구할 수 있으나 기타의 간섭 및 적용을 받지 않는 특별 자치로 시행된다.
- 3항 모든 한림대학교 학우는 선거를 민주적이며 공정하게 치루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4항 총학생회 선거는 보통, 직접, 비밀, 평등 선거를 원칙으로 진행한다.

제2조 선거시행세칙의 목적

- 1항 한림대학교 총학생회 선거시행세칙은 총학생회 선거를 민주적이며 공정하게 진행하기 위한 제반 사항을 정함에 목적을 둔다.

제3조 적용의 범위

- 1항 본 세칙은 한림대학교 총학생회 선거를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 2항 단과대학은 본 세칙을 적용하되, 학과·전공 학생회 및 동아리연합회, 사생위원회는 각 회의 세칙을 적용한다. 단, 세칙이 없을 경우 본 세칙을 적용한다.
 1. 단과대학은 한림대학교 중앙 선거 시행 세칙을 적용하여 선출한다.
 2. 학생복지위원회 및 예결산심의위원회는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의 투표를 통하여 선출한다.
 3. 졸업준비위원회 중 위원단은 총학생회 국장 중 2인으로 선발하며, 위원은 중앙운영위원회 소속 각 단과대 1인으로 선출한다.
 4. 사생위원회는 자체적인 선거 시행 세칙을 적용하며, 유권자는 사생을 대상으로 선출한다.
 5. 방송국장은 자체적인 선거 시행 세칙을 적용하며, 유권자는 방송국원을 대상으로 선출한다.
 6. 동아리연합회는 자체적인 선거 세칙을 적용하며, 유권자는 중앙동아리원을 대상으로 선출한다.

2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4조 위 상

- 1항 총학생회 선거에 관한 제반의 업무를 선거시행세칙에 의하여 진행, 조절, 통제할 권한을 총학생회로부터 위임받은 최고기구이며 학생회칙과 본 세칙에 따라 독립적으로 결정하고 활동한다.

제5조 목 적

총학생회 선거를 공정하고 민주적, 대중적으로 진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1항 총학생회 선거에서 공정성, 민주성, 대중성을 구현할 제반사업을 기획, 집행한다.
- 2항 총학생회 선거를 올바른 정책대결의 장으로 만들기 위한 제반활동을 전개한다.
- 3항 선거시행세칙과 선관위에서 결정한 선거방식에 대한 집행을 감시하고 이를 시행치 않을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고 공정선거를 해치는 제반 선거운동과 그 외 단체와 개인의 특정 운동 및 행위를 적발하여 관련된 소속 선거운동본부에 타당한 징계를 가한다.
- 4항 선관위는 선거인단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 5항 선관위는 대중적인 선거를 위해 그 의의와 선거비 사용 내역을 공개한 후 선거운영비를 확보하여 책임을 지고 사용한다.

제6조 구 성

- 1항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전체학생대표자회의를 통해 최소 30일 전에 선출한다.
- 2항 중선관위의 임기는 선출 직후부터 차기연도 중선관위 위원장단 선출까지로 한다.
- 3항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선거관리위원을 단과대학 학생회 소속 1인으로 임명하고, 이를 고지한다.
- 4항 중선관위는 피선거권 및 투표권이 없고 선거운동에도 참여할 수 없다. (단, 사퇴한 이후에 참여할 수 있다.
- 5항 한림대학교 학생회칙 제107조 임시위원회 조항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단 결위 시, 중앙선거관리 임시위원회를 구성한다.

제7조 권 한

중선관위는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할 권한과 책임을 가진다.

- 1항 선거의 전반적인 사항을 총괄할 권한
- 2항 세칙에 정해지지 않은 선거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권한
- 3항 선거 관련 사안에 대한 독립적인 해석을 내릴 권한
- 4항 세칙 위반 여부를 판단하고 징계할 권한
- 5항 선거인단 사이에 분쟁이 발생할 시 중재 및 조정할 권한
- 6항 제1조 선거의 원칙을 지킬 책임
- 7항 모든 권한에 대한 책임

3장 선거권과 피선거권

제8조 선거권

- 1항 본 회에 등록된 학생 명부에 명시된 학우 중 1인으로 한다.

제9조 피선거권

총학생회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자의 자격은 다음 각 항의 규정으로 주어진다.

- 1항 학교의 학우이어야 한다.
- 2항 한림대학교 학생회칙 전문에 위배되는 목적을 갖지 아니한 자
- 3항 재학생 1/10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복수 추천은 가능하고 단과대 후보는 1/15 이상)
- 4항 총학생회 및 단과대학 선거입후보자는 4학기 이상 학교에 등록을 한 자로 현재 재학 중인 자에 한한다.
- 5항 전학대회 구성원 및 학생회 간부의 경우에는 등록 마감 전에 그 직을 사퇴한 자에 한한다.

제10조 후보자 등록

- 1항 총학생회에 입후보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등록 마감 시간 오후 6시 전까지 선관위에 제출해야 한다.
 1. 입후보자 지원서 1부(동연 선관위 소정 양식)
 2. 추천인 명부(도장이나 서명)
 3. 재학증명서 1부
 4. 회칙 및 선거시행세칙 준수 서약서 1부
 5. 선거운동원 명부, 사퇴서
 6. 그 외 선관위원장이 요구하는 추가 제출 서류
- 2항 총학생회 후보 등록 서류는 선관위에서 직인 날인 후 배포하여 2년간 보관, 관리한다.
- 3항 추천인 명부 배포는 선관위의 직인이 기재된 것만이 효력을 발생한다.
- 4항 입후보 시에는 위에 명시된 서류와 함께 선거 포스터 초안과 증명사진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 5항 추천인 명부는 반드시 수기로 작성하며, 중복추천자는 무효 처리한다.

제11조 입후보자 심사

- 1항 선관위는 등록 시간 마감 후 12시간 이내에 9조에 의거 입후보자의 자격 심사를 해야 한다.
- 2항 입후보자가 10조의 구비서류를 등록 마감 시간까지 제출하지 아니하면 등록을 거부한다.

제12조 입후보자 최종 등록과 공고

- 1항 선관위는 등록 마감 후 24시간 이내에 입후보자와 최종 등록을 위한 모임을 소집하여야 하며 역할은 다음 각 호의 규정으로 한다. (단, 참여자는 입후보자와 선본장 전원으로 하며, 불참 시 해당 후보에 ‘주의’ 조치한다.)
 1. 등록 구비 서류 확인 및 최종 등록 결정(후보 3인 이상 시 기호를 등록 순으로 한다.)
 2. 선거 유세 기간 결정: 각 선본의 의견을 수렴하고 가능 여부를 선관위가 세칙에 의거, 판단하여 합의한다.
 3. 후보자 색상 결정: 각 선본은 모임 전까지 희망 색상을 hex 코드로 5개 이상 준비한다. 지명 순서는 현장 추첨을 정하며, 선본 간 색상이 같거나 유사한 경우 지명 순서에 따라 우선권을 부여한다. (단 색상이 유사하거나 같더라도 선본 및 선관위의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에는 사용 가능하다.)
 4. 선거시행세칙 검토 : [한림대학교 학생회칙 제100조 6항 기타 회칙 상에 기재되지 아니한 선거

사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각 단위 선거운동부와 협의 하에 결정한다]에 의거하여 각 선본은 선거 기간 중 선거시행세칙에 대한 건의 및 의사 표현의 권리를 가지며 선관위는 이를 각 선본과 합의 하에 결정해야 한다. (단 선거일 이후 선거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과 선거 집행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항에 관해서는 선관위 판단하에 이를 거부할 수 있다.)

2항 선관위는 등록이 확정되면 후보자 유세에 앞서 이를 공고해야 한다.

※ 단일 후보의 경우 후보단과 협의 하에 중간 공고 제외 가능

4장 선거

1절 총칙

제13조 선거일

1항 선거일은 총학생회와 선관위의 협의에 의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다.

2항 1항의 일정은 선관위에서 선거일 15일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3항 등록마감 후 선거운동 기간은 14일 이내로 한다.

4항 이외의 구체적인 선거일정은 선관위에서 정한다.

제14조 선거운동

1항 선거운동이라 함은 특정후보의 당선을 위한 제반의 행위로 규정한다.(단, 선거에 관한 일반적인 의견 개진은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다.)

1. 후보자의 선거운동은 유세와 정책설명회, 합동유세, 학내 언론 인터뷰 등으로 이루어지며 야외 개인 유세는 당일 18:00 이후에는 경고 및 시정조치
2. 선거운동원은 선전물 부착 및 배포, 유세 참여를 할 수 있다.
3. 각 후보 주최의 옥외집회 및 행사는 허용하지 않으며, 옥내 행사는 3회 이내로 제한한다.
※ 옥내 행사 즉 후보 주최의 행사의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의 허가가 필요함.
4. 선거운동원은 본 회에 속한 학우이어야 하며 운동원임을 나타내는 명찰을 착용해야 한다.

2항 추천 기간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1. 후보자 추천, 설문조사 등은 사전선거운동으로 규제하지 않는다. (단, 설문조사는 선관위의 허가를 받은 후 진행한다.)
2. 추천서는 선관위에서 사전 배포한 추천서를 사용한다.
3. 총학생회 임원들과 회의를 통한 추천행위 및 유세는 규제한다.

3항 학내 언론은 공영제로 한다.

4항 각 선본의 명의로 올리는 글 외에 개인 명의로 의한 지지, 비방 등의 글은 선관위에서 규제한다.

5항 1항의 1,2,3호와 2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선본에게 '주의' 조치하고 1항의 4호를 위반한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조치한다.

제15조 선거운동기간

1항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기간은 후보자 선거 유세 시작일로부터 투표 전날 자정까지로 한다.

2항 선거운동 기간 이전의 사전 선거운동에 대해서는 선관위의 판단에 따라 해당 선본에 징계 조치할 수 있다.

3항 사전 선거운동은 선거 공고일로부터 등록일까지 후보 및 후보자 소속 단체 명의를 건 지지 및 추천대회, 선거에 관계된 물품 판매 및 배포, 유인물 배포 등의 활동과 각종 행사에서 사회, 인사, 의견 발표

하는 것을 말한다.

4항 각 선본에서 투표 전일 자정까지 선본에서 붙인 선전물을 자진 철거해야 한다.

5항 4항을 어겼을 시 후보자에게 '주의' 조치한다.

제16조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1항 다음 각 호에 해당된 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2. 전학대회 구성원 및 학생회 간부(단, 입후보자는 등록 접수 시에 선관위에 사퇴서를 제출하고 그 사실을 지정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하며, 선거운동원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는 등록 마감일까지 사임하고 사퇴서를 선관위에 제출해야 한다.)
3. 본교의 재학생이 아닌 자(즉 본교의 재학생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휴학생은 제외한다.

2항 1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후보에게 '경고' 조치한다.

제17조 유세

1항 유세는 학교 내 강의실 유세, 야외유세와 합동유세로 구분한다.

2항 유세장에는 정후보, 부후보 중 1인은 참석하여야 한다.

3항 후보자는 유세가 끝날 때까지 퇴장할 수 없다. (단, 부득이한 경우에는 선관위원장의 동의하에 10분 이내로 자리를 비울 수 있다.) 어기면 '주의' 조치한다.

4항 타 후보자가 유세 시 유세를 방해하거나 자기 선본의 유인물, 선전물을 배포할 수 없다. 어기면 '주의' 조치한다.

5항 유세장에서 배너, 깃발 등은 사용할 수 없다. 어기면 '시정명령' 조치한다.

6항 유세장의 질서를 문란시키는 연설 방해, 야유, 흑색선전, 유언비어 배포와 그에 관련된 특정 운동 및 행위에 대해 선관위는 선거운동원일 경우 해당 선본에 '경고' 조치하고 선거운동원이 아닐 경우에는 강제 퇴장 및 관련 단체의 경우 그 소속된 단체가 누구의 지지를 하는 지의 여부를 판단하여 그 선거운동본부에 경고 조치 및 그 개인은 선거권을 박탈할 수 있다.

7항 강의실 유세 시 학과 행정실 또는 담당 교수의 동의를 얻어 실시한다.

8항 강의실 유세는 후보자를 포함 3인 이내로 동행이 가능하며 유세에 필요한 선전물(차트, 유인물)은 사용 가능하다.

9항 강의실 유세는 선관위의 사전 신고로 한다.

10항 야외유세는 후보자와 선거운동원이 선거운동의 일환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유인물 배포 및 규정된 선전 활동을 하는 것을 지칭한다. 단 마이크, 엠프 등 음향 기기의 사용을 금한다.

11항 합동유세는 선관위의 관리 하에 실시한다.

12항 합동유세는 찬조연설자 1인 및 정·부회장 후보, 각 분과장 후보를 모두 포함한다.

13항 합동유세는 각 후보자 및 찬조자, 선본장은 유세시간 20분 전에 정해진 유세 장소에 도착해야 한다. 이를 어길 시 '주의' 조치한다.

14항 합동유세의 순서는 합동유세 10분전에 선관위장의 입회하에 각 선본장 혹은 후보자의 추첨으로 결정한다.

15항 합동유세는 각 단대별 후보 연설을 먼저 하고, 찬조자가 있을 경우 찬조연설, 그리고 정·부후보 연설을 결정된 순서에 따라 단대별 후보 7분, 각 후보자의 찬조연설 5분, 부후보 7분, 정후보 10분으로 한다.

16항 합동유세는 연설 시간 3분 전에 연설자에게 시간을 알려주어야 하며, 정시에 마이크를 끄며 3분을 넘기면 '주의' 조치한다.

17항 이 외의 합동유세는 선관위원장이 책임을 진다.

18항 합동유세에 불참한 후보는 '경고' 조치하고 선관위의 결정에 따라 유세장에서 즉시 공포한다. 단,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 선관위에 미리 통보하여 선관위원 과반수의 동의를 구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18조 정책 공청회

- 1항 정책공청회는 선관위가 내용 및 장소를 결정한다. (장소는 비전홀 혹은 중강당을 원칙으로 하며, 대어가 어려울 경우 방송국과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
- 2항 정책공청회의 공정한 진행을 위하여 선관위는 질의를 통제할 수 있다.
- 3항 정책공청회는 후보자만이 답을 할 수 있고 각 후보자는 유세에 필요한 선전물(차트, 유인물)은 사용 가능하다.
- 4항 즉석 질문에 비방성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선관위는 이를 통제하고 후보자는 답변하지 않아도 된다.
- 5항 이 외의 정책 공청회의 진행은 선관위원장이 책임을 진다.
- 6항 공청회의 질서를 문란시키는 연설 방해, 야유, 흑색선전, 유언비어 배포와 그에 관련된 특정 운동 및 행위에 대해 선관위는 선거운동원일 경우 해당 선본에 '경고' 조치하고 선거운동원이 아닐 경우에는 강제 퇴장 및 관련 단체의 경우 그 소속된 단체가 누구를 지지하는지에 여부를 판단하여 그 선거운동 본부에 경고 조치 및 그 개인은 선거권을 박탈할 수 있다.

제19조 금지 사항

- 1항 건전한 선거풍토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한 일체의 금품 수수 행위
 2. 선관위가 개최하지 않은 집단적인 유세 행위
 3. 등록 마감일 전에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4. 상대 후보에 대한 비방, 흑색선전, 유언비어 유포, 위 사함과 관련된 특정 운동 및 행위, 선거운동원의 폭력 등 기본 질서를 해하는 각종 폐습 행위
 5. 추천서를 부당하게 작성한 행위
 6. 외부인이 선거운동에 참여한 행위(선거본부에서 이를 제지하지 않은 경우에만 해당)
 7. 중선관위의 확인을 받지 않은 모든 종류의 홍보물이나 선전물을 배포, 부착한 행위
 8. 학회에서 선거운동을 한 행위
 9. 사전 선거운동을 한 행위
 10. 기타 선거의 공정과 공평을 해치는 행위
- 2항 전학대회, 학생회 간부를 통한 선거운동
 1. 유착관계 발생 시 엄중 경고
 2. 학생회 간부의 범위는 총학생회, 단과대학 학생회, 학과 학생회 구성원으로 정한다.
 3. 선거운동본부는 선거 기간에 총학생회실 및 단과대 학생회실 사용을 금지한다.
- 3항 1항의 1호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후보를 '후보자 자격을 박탈'하고 그 외의 규정을 위반했을 때는 '경고' 조치하며, 후보자 선거운동원이 아닌 단체 및 개인이면 관련 소속 단체에 징계 및 선거권을 박탈한다.

2절 인쇄 및 선전에 관한 규정

제20조 인쇄물에 관한 규정

- 1항 인쇄물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다.
 1. 모든 인쇄물은 반드시 선관위에서 부수와 내용 확인을 거친 후 배포한다.
 2. 모든 인쇄물에는 비닐코팅을 하지 않는다.
 3. 선관위에서 만드는 후보자의 인물 포스터는 1종 1도 100부로 하고, 각 후보자별 색상을 결정할 수 있다.
- 2항 정책공약집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다.
 1. 정책공약집은 각 선본에서 1회 발행하고 공동정책공약집으로 발행한다.

2. 부수는 최고 300부로 하고 매수는 40페이지 이내로 한다.
3. 표지는 코팅하지 않는다.
4. 크기는 B5이하 크기로 한다.
5. 속지는 일반 모지로 한다.
6. 색상은 후보자 색상, 흰색, 검정색만 사용한다.
7. 세부사항은 선본장 회의를 참조하여 선관위에서 결정한다.

3항 리플렛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다.

1. 리플렛은 각 선본에서 1회 발행한다.
2. 부수는 최고 300부 이내로 하고 매수는 8페이지 이내로 한다.
3. 표지는 코팅하지 않는다.
4. 크기는 B5이하 크기로 한다
5. 속지는 일반 모지로 한다.
6. 색상은 후보자 색상, 흰색, 검정색만 사용한다.
7. 세부 사항은 선본장 회의를 참조하여 선관위에서 결정한다.

4항 포스터 수량은 총학생회 100장, 단과대학 50장 이내로 하며, 한림대학교 로고, 사진, 약력, 정책 및 투표날짜는 꼭 포함 시킨다.

5항 현수막은 총학생회 15장 이하, 단과대학 6장 이하로 한다.

1. 크기는 700cm × 90cm 이하 자유
2. 세부사항은 선본장 회의를 참조하여 선관위에서 결정한다.

6항 1,2,3,4,5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인쇄물을 즉시 배포 중지하고 해당 후보에게 고의성 및 사안의 경중에 따라 '시정명령' 및 '주의' 조치한다.

제21조 선전의 형식

1항 선전의 형식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다.

1. 스티커, 배지, 배너, 명찰은 절대 금한다.
2. 선거운동복은 선거운동 간에만 착용할 목적으로 1종 제작 및 사용 가능하며, 색상은 후보자 색상으로만 제한한다.
3. 영상 및 방송에 의한 선전은 선관위의 합의에 의해 시행한다.
4. 각 후보 선본장은 상호 합의한 후 선관위의 허가를 받아 공동선전물을 만들 수 있다.
5. 조형물에 의한 선전은 제한한다.
6. 대자보 선전은 3종류 이하로 하되 내용은 제한을 두지 않는다.(사진, 색상, 기타 물품을 이용한 선전)
7. 선거운동기간에 사용되는 모든 선전물은 선관위의 사전 허가 및 직인을 거친 후 후보의 이름을 밝히고 사용한다.(단, 타 후보에 대한 비방 등 민주적인 선거 분위기를 해칠 수 있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선관위의 결정으로 배포 금지를 명할 수 있다.)

2항 1항의 1, 3, 4, 5, 6, 7호를 어길 시 해당 후보에게 '시정명령'을 조치한다.

제22조 선전의 방도

1항 선전의 방도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다.

1. 모든 선전물에는 선관위의 직인이 들어가야 한다.
2. 모든 배포물은 배포 전 선관위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3. 선관위는 각 선본의 선전물 부착을 위한 게시판을 지정한다.
4. 선전물은 선관위의 지정 게시판에만 부착한다. (지정된 게시판 외의 선전물 부착은 절대 금한다.)
5. 새로운 형식의 선전방식은 적극 권장하나 선관위와 사전에 반드시 협의하여 시행토록 한다.

2항 1항 1,2호를 어길 시는 불법선전물을 즉시 수거하고 해당 선본에 '주의' 조치를 한 후 배포를 금지한

- 다.
- 3항 1항의 3,4,5호를 어길 시는 해당 선본에 ‘시정명령’ 조치한다.
- 4항 각 후보 운동원의 구두에 의한 타 후보 비난과 비방은 금한다.
- 5항 타 후보 또는 타 후보 선거운동에 대한 문제 제기는 선관위에 제출하고 선관위가 진의를 파악, 필요할 때는 타당한 징계 조치를 가한다.
- 6항 선관위에서는 문제가 있는 부착물에 직인을 주지 않으며, 불법 부착 시 무조건 수거하고 문제가 있는 선전물은 배포 금지한다.

제23조 온라인 선전

- 1항 온라인 선전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다.
 - 1. 온라인 선전은 SNS 및 각종 온라인 매체를 이용하는 모든 선전 행위를 뜻한다.
 - 2. 모든 온라인 선전물에는 업로드 전 선관위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3. 홈페이지, SNS 계정의 개설은 사전에 허가서를 작성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 4. 온라인 선전은 선거운동 기간에만 가능하며, 허가를 위한 목적에서도 불가하다.
 - 5. 선거운동본부를 제외한 제3의 인물이 온라인 선전에 참여하거나 이를 공유해서는 아니 된다.
 - 6. 선거운동본부에서 공식적으로 제작 및 배포한 홍보물이 아니어도 선거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내용을 허가 없이 게시해서는 아니 된다.
- 2항 1항을 어길 시는 해당 선본에 ‘주의’ 조치한다.
- 3항 각 후보 운동원의 구두에 의한 타 후보 비난과 비방은 금한다.

5장 선거운동본부

제24조 명 칭

- 1항 추천인 작업기간 동안 000, 000 후보 추대위로 한다.
- 2항 등록 후부터는 000, 000 선거운동본부라 한다.
 - ※ 당선 후의 학생회 이름의 사용이 가능하다.

제25조 장 소

- 1항 선거운동본부는 대중 공간을 사용할 수 없다.
- 2항 불가피할 경우 선관위원장의 승인 하에 사용할 수 있다.
- 3항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등록 후 각 후보자들의 요구에 따라 장소를 마련하기 위해 동아리연합회, 총학생회, 대학 본부에 협조를 요청하고 최대한 노력한다.

6장 징계

제26조 정 의

- 1항 징계라 함은 규칙 각 조항에 어긋나는 행위와 기타 선관위가 징계사유라고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 해당 후보나 특정 단체 및 개인의 소속 선거운동본부에 제재를 가하는 것을 말한다.

제27조 징계의 종류

- 1항 징계는 선관위의 고유 권한이며 징계를 받은 후보의 선본은 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2항 징계는 시정명령, 주의, 경고로 나누며 시정명령 5회는 주의 1회, 주의 2회는 경고 1회에 해당하고, 경고 3회 시에는 후보 자격을 박탈한다.
 - 1. 가벼운 시행 세칙 위반이었을 때 선관위가 해당 후보에게 시정명령 조치한다.
 - 2. 규약에 주의를 명시한 경우와 시정명령 후 똑같은 행위가 해당 후보로부터 반복되었을 경우 주의 조치한다.
 - 3. 규약에 경고를 명시한 경우와 주의 조치를 2회에 받았을 경우 경고 조치한다.
 - 4. 명시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는 규칙 위반과 선거와 관련한 문제성 행위를 했을 경우 고의성 여부, 올바른 선거문화에 대한 위배 여부,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징계의 종류를 결정한다.
 - 5. 즉시 시정 사안은 위원회 내의 결정으로 시정 조치를 취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결정에 반하거나 중대 사항에는 경고를 취한다.
 - 6. 선관위 비방 및 욕설 등은 시정명령, 주의 없이 바로 경고 조치
- 3항 경고 3회로 자격 박탈된 후보는 당해 연도의 피선거권을 상실한다.

제28조 징계의 통보

- 1항 시정명령과 주의는 즉시 해당 후보에게 구두로 통보하며, 경고는 즉시 통보하고 이를 공고한다.
- 2항 시정명령이나 주의를 받은 후에도 해당 후보가 이를 4시간 이내에 시정하지 않으면 해당 후보에게 주의 또는 경고 1회를 준다. 다만 즉시 시정명령은 1시간 이내에 시정하지 않으면 해당 후보에게 경고 1회를 준다.
- 3항 선전물 부분의 위반 시 동일 조항의 경우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될 시 동시에 여러 곳에서 발견되더라도 동일 사안으로 처리하여 징계한다.
- 4항 경고를 받은 선본은 15시간 이내에 선관위의 허가 하에 공개 사과문을 ‘공개 사과문’이라는 제목으로 선거관리위원회 지정 게시판에 대자보 1장 이상의 크기로 해야 한다.
- 5항 선관위는 징계 사실이 적발된 후 15시간 이내에 심사, 통보해야 하며 징계 받은 선본은 통보를 받은 후 15시간 이내에 사유서와 함께 선관위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고 선관위는 이로부터 8시간 이내에 이를 재심사해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선본은 이로부터 12시간 이내에 이를 시정해야 한다. 단, 투표기간 전에 적발된 사안에 대해서는 선관위의 결정에 의거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29조 징계의 의결

- 1항 징계의 의결은 선관위원 과반수 출석의 2/3 이상 찬성으로 한다. 단, 후보가 경고 3회로 인하여 후보 자격이 박탈될 상황이 된 경우에는 선관위 재적인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1차에 한하여 징계를 유보할 수 있다.
- 2항 ‘경고’에 대한 선본의 이의제기가 선관위의 재심의에서 받아들여지면 선관위는 이 사실을 제공고해야 한다.
- 3항 한 번 이의제기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이의제기할 수 없다.

7장 참관인

1절 투표참관인

제30조 통 칙

- 1항 투표참관인은 각 후보를 대신하여 해당 투표소에 배치되어 투표 진행을 감독하는 자이다.
- 2항 각 후보자는 투표소 참관인 1~3인을 배치할 수 있다.

제31조 자 격

- 1항 참관인은 원칙적으로 한림대학교 학생으로 한다.
- 2항 각 후보자는 후보자 등록 시 참관인의 명단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단, 참관인을 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투표 3일 전 18시까지 교체할 명단을 선관위에 제출해야 한다.)
- 3항 2항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참관인을 배치할 수 없다.

제32조 참관인 규정

- 1항 참관인은 투표소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 2항 참관인이 투표소에서 부정행위를 할 경우 선관위와 타 후보 측 참관인이 만장일치로 인정했을 때 선관위원장은 퇴장을 명할 수 있으며 투표종료까지 투표소에서 참관 자격을 상실한다.
- 3항 참관인이 다음과 같은 행위를 했을 때 부정행위로 간주한다.
 1. 투표를 방해했을 경우나 소란을 피우는 행위
 2.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 특정 후보를 지칭하는 물품을 소지하거나 언동을 할 경우
 3. 기타 선관위에서 부정행위로 결정한 경우
- 4항 참관인은 투표 시간 동안 선관위에서 발부한 명찰을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 5항 1항부터 4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후보에게 '주의' 조치한다.

제33조 기타사항

- 1항 참관인들은 투표 시간 중 장시간 투표소를 떠날 수 없으며 특정 후보 측의 참관인 부재 시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그 후보 측의 이의제기는 기각한다.
- 2항 참관인은 투표를 마친 후 함께 밀봉하고 개표 장소로 운반한다.
- 3항 투표소 내에서 참관인이 이의를 제기할 경우 선관위원장의 입회하에 합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선거권자의 투표를 중지한다.(단,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선관위의 결정에 따른다.)
- 4항 1인당 1시간 이상 참관인 착석을 원칙으로 한다.
- 5항 참관인을 결정하지 못할 때는 선본장이 입회할 수 있다.

2절 개표참관인

제34조 역 할

- 1항 각 후보의 선본장은 투표 3일 전 18시까지 개표참관인 1인을 선정하여 선관위에 보고하여야 한다.
- 2항 개표참관인은 개표 시작 30분 전까지 개표장에 도착하여야 한다.
- 3항 개표참관인은 개표 상황을 참관, 득표의 검산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단, 개표참관인의 교체는 선관위원장의 허락 하에 한다.)

8장 이의제기

제35조 이의제기권자

- 1항 선거에 관한 이의제기는 각 후보의 선본장만이 할 수 있다.
- 2항 선거운동본부는 선본장을 통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선거 개표 당시는 선본장, 선본장이 없을 경우에는 권한대행이 구두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24시간 이내에 이를 다시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 3항 선거운동본부에서 선관위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후보자에게 징계를 가할 수 있다.

제36조 이의제기의 처리

- 1항 이의제기가 있을 경우 선관위 결정으로 이를 처리한다.
- 2항 이의제기 처리는 선관위 과반수 참석과 참석인원 중 2/3의 의결로 처리한다.

9장 투표

1절 총칙

제37조 투표일과 투표시간

- 1항 투표는 3일에 걸쳐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2항 투표 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로 한다.
- 3항 마감 시 투표소에서 대기 중인 선거인은 투표할 수 있다.
- 4항 학과 및 전공 학생회 투표 또한 위와 같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제38조 투표구 및 투표소

- 1항 1개 투표구에 1개 투표소로 한다.
- 2항 투표구는 선관위의 의결로 증가할 수 있다.
- 3항 투표소에서는 선관위 홍보물 이외에 유인물 부착을 금한다.
- 4항 선관위는 선거 일주일 전까지 투표 장소를 결정한다.

제39조 신분확인

- 1항 선거권자는 선거인 명부를 보고 신분을 확인하여야 한다. 신분 확인은 다음 각 호에 한 해 실시한다.
 1.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2. 모바일 신분증(정부 24, PASS, 온라인 신분증)
 3. 학생증(카드형)
 4. 모바일 학생증(모바일 ID)

제40조 투표 절차

- 1항 투표 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한다.
 1. 선관위의 신분 확인
 2. 선거인 명부 확인
 3. 투표자의 날인 또는 서명

- 투표용지 배부
- 선관위의 확인 및 직인
- 기표소에서 기표
- 투표

2항 선거인이 투표용지를 분실한 경우 재교부하지 않는다.

3항 선거인은 투표용지를 투표장 밖으로 가져갈 수 없으며 반드시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

제41조 투표소에서 질서

1항 투표소에서는 투표 행위 이외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2항 선분장과 합의하여 후보자의 투표소 내 인사 등의 행위는 규제 또는 실행할 수 있다.

제42조 투표록의 작성

1항 선관위원장은 투표록을 작성하여 출석한 위원 전원과 함께 서명 날인하여 봉인한 후, 그 내용을 개표 개시 전에 공표하여야 한다.

제43조 투표일 후보 활동

1항 후보자들은 선관위원장의 허락 하에 투표 참여를 호소할 수 있다.

2항 투표 당일 후보자 활동은 선관위와 각 후보자 간의 합의에 의한 활동만이 가능하며 이를 제외하고는 다른 어떠한 활동도 할 수 없다.

제44조 투표 참여 독려

1항 선관위는 투표 참여를 독려할 수 있다.

제45조 투표함

1항 투표가 시작되기에 앞서 선관위원과 각 선본의 참관인들이 참여한 가운데 투표함을 확인하고 투표함을 설치한다.

2항 투표가 끝난 후 투표함을 봉하고 선관위원장과 참관인이 날인한 후 선관위원장과 참관인이 함께 개표 장소로 이동한다.

제46조 투표함의 개표 장소 도착 후

1항 선관위는 투표함 및 물품 등을 즉시 확인한다.

2항 선관위는 투표함의 이송 전후의 이상 유무에 관한 참관인의 확인을 받는다.

10장 개표

제47조 개표시간

1항 개표시간은 투표 마감 후 2시간 이내에 실시한다.

※ 단, 부득이한 경우에는 선관위원장의 재량으로 이를 연기할 수 있다.

제48조 통 칙

1항 개표는 선관위원들만이 할 수 있다.

2항 표의 유효, 무효 및 특정 후보의 득표의 기준은 선관위가 정한다.

제49조 개표장

1항 개표장은 학교 내의 공개된 장소로 선관위가 정한다.

2항 개표장에서의 질서 유지는 선관위원장의 책임 아래 수행한다.

3항 후보자는 개표 시간 30분 전에 개표장에 도착하여야 하며, 개표 종료할 때까지 자리를 지켜야 한다.

4항 이를 어길 시 즉시 주의 조치한다.

제50조 개표소

1항 개표소는 방청객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도록 설치해야 한다.

2항 개표소에는 선거관리위원장, 선관위원, 개표참관인만이 있을 수 있다.

3항 개표소에서의 연락은 선관위원장이 통제한다.

제51조 개표 절차

1항 개표는 다음의 각 호의 순서에 의한다.

- 투표인 수의 공고
- 투표함 개봉
- 개표
- 개표참관인의 재확인 및 득표의 계산
- 후보의 득표 묶음별로 분류하여 서류봉투에 봉인 후 보관
- 현황판 기재

제52조 방청석과 방청인

1항 선관위는 개표소로부터 정상적인 개표 진행을 위하여 적절한 간격을 두어 방청석을 설치한다.

2항 방청석은 누구나 출입할 수 있다.

3항 방청인은 개표 진행을 방해하는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선관위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53조 무효투표

1항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표로 간주한다.

- 선관위가 제작한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 투표용지에 선관위의 검인이 없는 것
- 어느 기표란에도 기표하지 않는 것
- 두 개 이상의 기표란에 기표한 것
- 경계선에 기표한 것
- 지정된 필기 및 투표 도구를 사용하지 않는 것
- 한 기표란에 두 개 이상을 기표한 것
- 투표함에 바뀐 투표용지

제54조 효력

1항 투표 결과 전체적으로 3% 이상의 오차가 발생한 때에는 선거 자체를 무효 처리한다.

11장 당선

제55조 당선의 기준

- 1항 과반수 투표의 과반수 득표로 한다. 단, 2타입이 출마한 경우에는 최다득표로 당선 여부를 결정한다.
- 2항 1위 득표자와 2위 득표자와의 득표 차이는 전체 투표의 오차를 초과하여야 한다.
- 3항 결선투표에서 연장 투표를 했으나 50%가 넘지 않으면 최다득표자로 당선을 확정한다.

제56조 당선공고

- 1항 개표 결과가 최종 확인된 경우에는 선관위원장은 이를 즉시 공고하고, 공고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이의신청을 받는다.
- 2항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에 선관위는 즉시 소집하여 제반 사항을 심의, 의결하여야 한다. (단, 이의 의결은 3항 선관위 재적 과반수 출석과 2/3 찬성으로 하여야 한다.)
- 4항 이의신청이 없을 때에는 당선 확정을 공고한다.
- 5항 당선 공고 직전까지 경고가 3회이면 당선 무효가 된다.

12장 연장투표 및 재선거

제57조 연장투표

- 1항 최초의 투표에서 전체 투표율이 50% 이상이 안될 경우 50% 이상이 될 때까지 연장투표를 실시한다.
- 2항 연장투표는 최대 1일을 넘지 않는다.

제58조 보궐선거

- 1항 총학생회 및 단과대학 학생회장단이 공석일 경우 보궐선거는 차기 연도 3월 중 실시하며 자세한 선거 일정은 선관위 회의를 통해 결정한다.
- 2항 기존의 제출한 서류들은 무효로 처리되며 입후보 절차부터 다시 실시한다.

13장 결선투표

제59조 원 칙

- 1항 결선투표는 3타입 이상의 입후보로 투표가 이뤄질 경우에 1차 투표에서 과반수 이상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았을 때에만 최다득표자와 차득표자로 실시한다.

제60조 결선투표

- 1항 결선투표는 1차 투표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실시하며 선거운동 방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다.
- 2항 선전물은 기존의 것을 사용할 수 있다.
- 3항 유인물은 리플렛 1종 1도로 하여 발행할 수 있다.
- 4항 선거운동방법은 최초 선거 시의 방법과 동일하다.
- 5항 합동유세는 1회에 한하여 실시할 수 있다.
- 6항 징계는 누적된다.
- 7항 결선투표 결과 최다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 8항 투표율이 50% 미만일 경우 선거 다음날 오전 09시 00분부터 오후 6시까지 연장하여 투표를 실시한다.

14장 선거연기

제61조 선거연기

- 1항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선거를 실시할 수 없을 경우, 그 선거를 연기할 수 있다.

제62조 협조 요청

- 1항 공정한 선거관리 및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선관위는 총학생회, 학교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3조 명찰 착용

- 1항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및 참관인 등은 직책 및 성명을 기입한 명찰을 착용하여야 한다.

15장 선거시행세칙

제64조 효력의 발생

- 1항 본 세칙은 전체학생대표자회의를 거쳐 선관위원장이 공포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 2항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회의를 통해 세칙 개정안을 입안할 수 있다.
- 3항 개정안이 입안되면 전학대회 의장은 빠른 시일 내로 전학대회를 소집해야 한다.
- 4항 개정안은 전학대회의 과반 수 이상 참석과 과반 수 이상이 찬성해야 하며, 의결되면 선관위원장은 이를 즉시 공포한다.
- 5항 본 세칙에 지정되지 않은 사항(개정되지 않은 범위와 누락 사항, 각종 세부 사항)은 선관위에서 결정한다.
- 6항 본 세칙은 선거일 공고부터 당선 확정자 최종 공고까지 개정을 금지한다.

부칙

- 1항 이 개정세칙은 2017년 10월 01일부터 시행한다.
- 2항 이 개정세칙은 2021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 3항 이 개정세칙은 2023년 10월 06일부터 시행한다.
- 4항 이 개정세칙은 2024년 9월 24일부터 시행한다.
- 5항 이 개정세칙은 2025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 6항 이 개정세칙은 2025년 9월 16일부터 시행한다.
- 7항 이 개정세칙은 2025년 12월 08일부터 시행한다.